

 신안산대학교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학과 운영 규정	규정번호 2-4-26 제정일자 2018.11.14. 개정일자 2021.06.11 책임부서/팀·계 P-TECH
---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학칙 제63조의 2(계약학과)의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1.14. 개정>

제2조(주관부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학과 운영을 위한 주관부서는 “P-TECH 공동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하는 대학(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이하 “P-TECH”라 한다.)학과라 함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도제학교)훈련 수료자 및 현장실습선도기업에 재직중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기술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자격)과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과를 말한다.

3. “모체학과”라 함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내의 일반학과를 말한다.

② 대학과 P-TECH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3. 해당 직종의 P-TECH를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P-TECH를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확보 또는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5. 그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학습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4. 그 밖에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2장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P-TECH학과의 정원은 해당 학년도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P-TECH학과의 재학생 수는 교사 및 교원확보율 계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P-TECH학과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	정원구분	입학정원	전문학사 학위종별	비고
융합기계설계과	정원외	60	공업전문학사	고속련 일학습병행 (P-TECH)
스마트전자전기과	정원외	60	공업전문학사	고속련 일학습병행 (P-TECH)

<2019.11.14. 개정>

제5조(P-TECH 계약 및 설치) ① P-TECH학과인 경우 대학과 산업체 등이 법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체 소재지의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기준)인 경우로 본다. 단,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권역제한 및 재직요건완화 등의 승인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P-TECH학과는 대학과 산업체 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 휴학 복귀 후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 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 ③ P-TECH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된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④ P-TECH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 운영) ① P-TECH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P-TECH 학과 설치 ·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P-TECH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P-TECH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P-TECH학과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P-TECH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P-TECH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P-TECH학과와 관련된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P-TECH학과로 하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P-TECH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 계속되는 휴업(휴직) · 사업장 이전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고용노동부의 등록금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일학습기업에 취업하여 교육훈련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여기간의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기업에 취업하여 교육훈련에 참여 할 경우에는 당해 P-TECH학과에서 맡을 수 있으며, 이때 잔여 등록금은 학생이 부담한다.

제8조(운영경비) ① P-TECH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학생선발

제9조(입학자격, 학생선발, 학습구분) ① P-TECH학과 과정에 지원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산업체 재직자이어야 한다.

② P-TECH학과 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 및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P-TECH학과 학생의 선발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으로 입학자격이 있는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④ 학습구분은 주·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입학허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P-TECH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으로 운영한다.

제15조(교육과정 운영) ① 수업은 출석수업(OFF-JT),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원격수업 및 그 밖에 P-TECH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②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성적은 대학에서 대학의 교원이 기업현장교사와 함께 평가하고, 교과목 교원이 교육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며 책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학점을 확인한다.

③ 대학의 전임교원(정년 및 비정년교원 포함)은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훈련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하며 P-TECH학과의 책임교수 또는 평생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학과장 또는 책임교수는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방문지도에 학과 또는 모체학과의 교원을 배정하고 관리한다.

⑤ 도제식현장교육훈련(OJT)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⑥ 학점 및 시수의 편성기준은 1학점당 1시간 이상으로 하고 모든 과목은 학점 당 이수시간을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주당 24시간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11.14. 개정>

제16조(출석인정) 일학습병행 매뉴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각 · 조퇴의 경우 타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의 지각 · 조퇴 기준을 준용하여 휴식시간을 포함한 단위시간(1시간)의 50%(30분)이상 훈련에 참여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구분	대상	일수
훈련 · 시험	예비군 · 민방위훈련,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배우자	5일
휴가	적용안함	-

제17조(졸업학점, 최소이수학점 배분) ① 재학기간 중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사정회를 거쳐 졸업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 배분은 다음과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교양 졸업학점	전공 졸업학점	졸업학점
P-TECH학과	8학점 이상	62학점 이상	75학점 이상

<2019.11.14. 개정>

제18조(교과이수 학점) ①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학칙을 준용한다.

② 교과목별 수강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의 훈련운영 계획을 적용하여 교과목별 학점을 신청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의 교과목이 교육부에 신고한 기준 교과목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 교과목별 매칭교과목에 따라 학점을 신청한다.

제19조(수업연한) P-TECH학과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단, 졸업유보생의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휴학) P-TECH학과는 사업기간과 교육훈련과정이 정해진 관계로 참여 학생의 휴학(병역복무에 의한 휴학 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2조(제적) 학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및 계약당사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23조(등록금) ① 학칙 제48조를 준용하되, 수업료, 입학금 등의 등록금은 P-TECH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금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하며, 출석시간에 따라 재정지원금으로 수업료가 충당되는 P-TECH학과는 학생의 결석에 의한 재정지원금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학생에게 별도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P-TECH학과 학생의 등록금 수납은 고용노동부의 후불제 월별지급 정책에 의하여 학기당 등록금 정산이 완납되었을 경우 학기별로 정산한다.

③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등록금 사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P-TECH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학기단위로 선입금되며,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급 정책에 따라 능력단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한다. 단, 중도탈락시 반환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다.

<2020.07.01. 신설>

⑤ 4개학기 수강결과 학점미달로 졸업이 유보되어 미취득학점을 취득하려는 자는 모체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

제6장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 지급

제24조(교원의 책임시수 감면) 본 대학 “교원의 책임수업시간 및 강사료 지급규정” 제2조 ④항을 적용하여 P-TECH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수 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제25조(강사료의 지급) OFF-JT 강의 강사료는 직위나 직책에 상관없이 1시간 기준 50,000원을 지급한다.

제26조(지도비의 지급) ① OJT 교과지도비는 직위나 직책에 상관없이 업체별로 학기당 담당교과목을 지정하여 100,000원을 지급한다.

② 기업/학생 지도비는 한업체당 학기별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OFF-JT 교과목 중 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이라 한다.) 교과목은 학기별로 각 프로젝트(Project)당 100,000원씩 담당교수에게 프로젝트(Project)지도비를 지급한다.

<2020.07.01. 신설>

제26조의 1(훈련과정개발 업그레이드비의 지급) 일학습과정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를 통한 훈련과정 개발보고서 및 학습안내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심사과정을 통과하였으나 개발센터에서 담당 Projet Manager(이하 PM 이라 한다.)교수에게 개발비를 미지급시 담당 PM교수에게 신규개발비 1/20이하 또는 50만원이하의 업그레이드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0.03.01. 신설>

제7장 학업성적처리

제27조(성적의 배점 및 평가) ① 학업성적은 출석성적 20%, 평소성적(수시고사, 과제물, 수업태도 등), 중간고사, 기말고사 80% 비율로 산출한다.

② 성적배점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성적배점 비율표]

유형구분	출석	평소학업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A형	20%	20%	30%	30%
B형	20%	30%	25%	25%
C형	20%	40%	20%	20%

제28조(시험) ① 시험은 학과목 진행 비율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고사종별	학과목 진행 비율	비 고
중간고사	40~60%	
기말고사	80~100%	
수시고사	30~70%	

<2021.03.01. 개정>

제29조(성적평가방법)

학업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2021.06.11. 개정>

제8장 휴보강 운영

제30조(휴강 및 결강)

휴강 및 결강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강의로 대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일학습병행 매뉴얼」, 대학의 학칙 및 학사규정, 계약학과 운영 규정 등을 따른다. <2019.11.14.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가정 개발 업그레이드비의 지급 경과조치) 2020년 훈련과정 개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3조(등록금) 제2항에 따른 등록금은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급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9학번에게만 적용한다.

2. 2021년 2월 28일 이후에 소멸한다.
- ② 제23조(등록금)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은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급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20학번부터 계속 적용한다.
 2. 2020학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